

해 외 출 장 복 명 서

1. 출장개요

□ 출장건명 : 일본 농가의 소비세 납세 사례조사

□ 출장목적

-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10%의 단일세율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과 비식용 농·임·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
 - 농산물이 중간투입재로 이용되는 경우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발생으로 인해 면세효과가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행정비용을 유발함.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되었으나 도입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은 큰 차이가 있음.
 - 1970년대에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가량에 이르렀으나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국민 식생활에서 과거에 비해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미가공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비중은 낮아짐.
-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점과 동 제도로 인해 지출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와 농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현재 모든 농산물에 대해 소비세(부가가치세)를 하고 있음.
- 일본 농가의 소비세 신고 및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 농가의 소비세 신고 및 납부에 있어서 일본 농협의 세무 관련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출장의 주요 목적임.

2. 출장자 및 출장기간, 출장지

- 출장자 및 출장기간

소속	출장자	직위	출장기간
농업·농촌정책연 구본부	임소영	부연구위원	2017.11.20.~11.23 (3박 4일)

- 출장지: 일본 도쿄

3. 주요 조사내용

- 일본 농업인 소비세 납부 현황
- 일본의 소비세와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차이
- 농자재에 대한 환급 여부와 환급방식
- 면세 농산물 구매자에 대한 환급
- 농업인의 기장과 납세 신고 과정에서 JA의 역할

4. 주요 면담자

일 시	일 정	주요 면담자 및 논의 내용
11/21(화)	○ 모리회계사무소 세무사 면담 - 모리 다케카즈 (森 剛一)	○ 일본 농업 전문 세무사 면담 - 일본 소비세법 개요 - 기장 및 세무 관련 서비스 실태
11/22(수)	○ 일본농협(JA) 세제 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면담 - 나가오 모토키	○ 일본농협 실무자 면담 - 농업인 소비세신고 현황 - 기장 및 소비세 신고 관련 실태 및 일본농협의 역할

5. 주요 출장내용

(1) 모리 다케카즈 (森 剛一) 회계사 면담

- 일본의 소비세제와 한국의 부가가치세제의 차이점
 -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본의 소비세는 장부방식의 전단계거래액공제 방법에 의해 계산됨.
 - 매입 공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일본의 장부 방식에서는 거래 총액에서 환급액을 계산함.
 - 매입액의 증빙은 청구서나 영수증으로 이루어짐.
 -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송장("세금 계산서"에 해당)에 의한 세액의 누적 계산을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2023년 10 월부터 자격 청구서 등 저장 방식 (송장 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 새로운 방식 하에서는 "적격 청구서 등"(송장)에 의한 세액의 누적 계산과 거래 총액에서 환급 계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일본의 소비세 납부하고 있는 농업인 현황
 - 전전년도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인 농업인은 소비세 신고 면제됨.
 - 매출액 1,000만 엔 이상이 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10% 가량에 해당됨.

- 소비세가 면제된 농업인들이 구매한 농자재에 대한 소비세 환급 여부
 - 면세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뿐만 아니라 소비세 환급을받을 권리도 없음.
 - 그러나 과세 매출액이 1,000 만 엔 이하라도 사전에 「소비세 과세 사업자 선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과세 매입 과세 매출을 초과할 경우 환급됨.

- 농자재에 대한 소비세 관련 혜택 부여 여부
 - 일본에서는 농업 자재에 대한 소비세에 관하여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고 현행 8%의 소비세가 부과됨.
 - 또한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됨에 따라 농산물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농업 자재에 대해서는 10%의 표준 세율이 적용됨.

- 외식업자나 가공업자가 면세사업자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 농산물에 대한 소비세 환급 여부
 - 현재 장부 방식에서는 과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면세 사업자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도 농산물 매입 세액 공제를받을 수 있음.
 - 면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과 과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 매입 거래 총액을 계산하여 환급 계산에 의해 매입 공제 세액을 산출하여 공제를 받게 됨.
 - 그러나 2023년 10월부터 청구서 방식이 도입되면 면세 사업자로부터의 매입 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다만 경과 조치에 의한 「면세 사업자의 매입 세액 공제의 특례」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면세 사업자로부터의 매입 세액의 80%, 2026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의 50%의 공제가 인정됨.

○ 일본의 경감세율 도입(2019년 10월)

- 일본은 현재 8%의 소비세를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하고 있으나 2019년 10월 부터 식음료품과 신문에 대해서는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재화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계획임.
- 식음료품에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임.
- 그러나 모든 식음료품이 경감세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식, 주류, 케이터링 서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식음료품은 경감세율을 받지만 영농투입재는 10%의 소비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농업인은 8%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10%의 세금을 공제받게 되므로 중간재 매입액의 2%를 환급받게 됨.
- 일본은 경감세율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장부방식에서 Invoice 방식(적격청구서)으로 신고방식을 전환할 계획임.
- 경감세율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입액과 매출액 신고시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분리하여 신고하게 됨.
- 새로운 신고방식을 도입하는데 있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과도기에는 적격청구서 대신 구분기재청구서를 이용하게 함.
- 경감세율 적용 대상 품목의 판매자는 매입자에게 경감세율 대상임을 나타내는 구분기재청구서를 발행하여야 함.
- 매입품 중 경감세율 적용 품목과 일반세율 적용 품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경감세율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방식과 간이과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2023년 1월 부터는 적격청구서 방식이 도입되는데 적격청구서는 구분기재청구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 등록번호(My Number), 세율별로 구분한 세금제외가액 또는 세금포함가액의 합계액 및 적용세율, 소비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적격청구서 보존방식 하에서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면세사업자 등)로 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단, 2023년10월1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구분기재청구서 등과 동일한 기재사항이 기재된 청구서와 장부를 보존함에 따라 매입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세액계산 방법 및 특례의 시행 스케줄

		2019.10 (도입)	2023.10	2026.
		【현행제도】	【구분기제청구서 등 보존방식】	【적격청구서 등】
세액계산 방법		세금포함 가격에서 환급계산	현행대로	· 적격청구서 세액의 누적계산 · 거래총액에서의 환급계산
청구서 등의 발행의무		청구서 등의 교부의무 없음 ※면세사업자도 발행 가능	현행대로	· 적격청구서의 교부의무 있음 ※면세사업자도 발행 불가
매입세액공제 요건		청구서 등의 보존이 요건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공제 가능	현행대로	· 적격청구서의 보존이 요건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공제 가능
		경매 등 대체발행된 청구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매입자가 추가한 구분기제 청구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 면세사업자로 부터의 매입세액공제 (80% 공제)
		중고품판매업자의 소비자로부터 매입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세액계산의 특례	매출세액계산 특례		경감세율대상 매출의 간주계산 (4년간)	
	매입세액계산 특례	간이과세	경감세율대상 매입의 간주계산(1년간) 현행대로 간이과세의 사후선택 (1년간)	제검토
검증		검증	검증	

(주) 매출세액을 「누적계산」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도 「누적계산」.

자료: 일본 국세청, 『알기 쉬운 소비세 경감세율 제도』, 2017.7

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의 도입

	【청구서 등 보존방식】 (현행제도)	【구분기재청구서 등 보존방식】 (2019년10월~)	
청구서 등	<p>○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서 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거래년월일 · 거래 내용 · 대가 금액(세금 포함) · 청구서 수령자의 성명 또는 명칭</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서</p> <p>○○귀하 11월분 21,600엔(세금포함) 11/1-30 소고기2kg 5,400엔</p> <p style="text-align: right;">합계 21,600엔</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서 (부분)</p> <p>□□귀하 11월분 43,200엔(세금포함) 11/1-30 소고기2kg 10,800엔</p> <p style="text-align: right;">합계 43,200엔</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매입 → 매출</p> <p>△△(주)</p>	<p>좌동 플러스 · 경감세율 대상품목이라는 표시 · 세율별로 합계한 대가 금액(세금 포함) (주) 청구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의한 추기도 가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서</p> <p>○○귀하 11월분 21,800엔(세금포함) 11/1 소고기2kg 5,400엔 11/8 나무젓가락4상자5,500엔</p> <p style="text-align: right;">합계 21,800엔</p> <p style="text-align: center;">(10%대상 11,000엔) (8%대상 10,800엔)</p> <p style="font-size: small;">(주)*표시는 경감세율(8%)적용계몽</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서 (부분)</p> <p>□□귀하 11월분 43,600엔(세금포함) 11/1 소고기2kg 10,800엔 11/8 나무젓가락4상자6,600엔</p> <p style="text-align: right;">합계 43,600엔</p> <p style="text-align: center;">(10%대상 22,000엔) (8%대상 21,600엔)</p> <p style="font-size: small;">(주)*표시는 경감세율(8%)적용계몽</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매입 → 매출</p> <p>△△(주)</p>	<p>좌동 플러스 · 등록번호 · 세율별 소 (주) 「세율별로 포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서</p> <p>○○귀하 11월분 20,000엔 11/1 소고기2kg 11/8 나무젓가락4상자</p> <p style="text-align: right;">합계 소비세</p> <p style="text-align: center;">(10%대상 11,000엔) (8%대상 10,000엔) 소비세</p> <p>△△(주) 사업자면 (주)*표시는 경감세</p> </div>
	<p>○교부의무 없음· 부정교부 별칙 없음 ○면허사업자도 교부 가능 =>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p>	<p>좌동 좌동</p>	<p>○교부의무 ○등록된 과 =>면세사 ○면세사업자 · 3년간 : · 그 후 : 의 매입세</p>
세액 계산	<p>○거래총액에서의 「환급계산」 (예) 43,200엔 × 8/108 = 3,200엔</p>	<p>○세율별 거래총액에서의 「환급계산」 (예) 10%대상: 22,000엔 × 10/110 = 2,000엔 + 8%대상: 21,600엔 × 8/108 = 1,600엔 = 3,600엔</p>	<p>○세율별 거래 ○적격청구서 (예) 누적 2,000 (주) 매출세액</p>
특례		<p>○매출세액·매입세액의 계산 특례 (간주계산·간이과세의 사후선택)</p>	
기타	<p>○ 경매 등 매개·중개업자에 의해 대체 발행된 청구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 3만원 미만의 거래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 중고품 판매업자인 소비자로부터의 매입 등은 장부기재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소매업 등이 발행하는 청구서는 기재사항의 간략화가 가능 (수령자의 명칭 기재 불필요)</p>	<p>좌동</p>	<p>좌동(단, 3만</p>

- 일본 농업인의 세무 신고
 - 상당수의 일본 농업인은 JA에서 세무신고의 작성 대행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치고 있음.
 - 세무사 법상 세금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세무 컨설팅 등의 세무 관련 업무는 자격증이 있는 세무사만 하도록 되어 있음.
 - 조합원의 거래 자료가 JA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서식이 작성되어 신고 절차가 간단함.
 - 그러나 법인은 시스템상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대부분 세무사를 이용하며 JA의 지원을 받지 않음.

- 소비세 신고 시 농업에 사용된 승용차,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 승용차는 농업용 활용 정도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며 인건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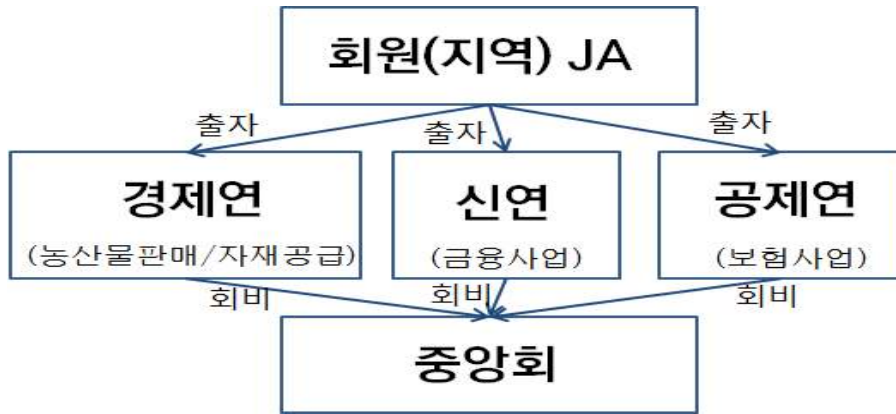
2. 일본농협(JA) 담당자 나가오 모토키(永尾 元樹) 면담

- JA 조직 개황
 - 일반 회원수: 998만 명
 - 연합회 소속 JA수 : 659개
 - 지점 수: 17,688개
 - 피고용자: 209,478명
 - 농산물 총 판매액: 407억 달러(JA당 6천만 달러)
 - 영농투입재 판매액: 187억 달러

- 일본 농산물의 매출과 영농기자재 공급에 있어서 JA의 역할과 비중
 - 농산물 매출의 상당 부분은 JA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전체는 아님.
 - JA를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의 비중은 쌀의 경우 약 50%, 채소 약 50%, 과수 30%, 소고기 60% 등임.
 - 다만 특정한 지역에서는 JA가 농축산물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홋카이도 지방에서는 90%의 농축산물이 JA를 거쳐서 유통되고 있음.

- JA를 통해 판매되는 영농기자재의 비중은 비료 약 70%, 농약 약 60%, 농기계 약 50%, 배합사료 약 30%, 농업용 하우스 약 80%임.
 - 농업기계를 제외한 다른 영농기자재의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JA의 이용 비중은 낮음.
- 일본 JA가 영농기자재의 판매와 농산물 출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기는 하지만 독점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농민의 기자재 구매기록과 농산물 판매기록이 JA에 보관되지는 않음.
- JA 이용 농가의 매출기록 및 매입기록의 저장 여부와 매출 및 매입기록을 활용한 세금신고
- JA는 영농기자재의 판매와 농산물 출하를 담당하면서 JA 조합원인 농민의 기록을 전산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소비세 신고 서식 작성이 쉽게 이루어짐.
 - 매년 사업자가 3월 15일까지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약 80%의 지역조합에서 대리작성을 해주고 있음.
 - 농업인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JA에 보관된 매입·매출 기록을 받아서 스스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 두 번째는 본인이 JA 이외의 사업자에게서 받은 매입·매출기록(청구서나 영수증)을 JA에 제출하여 JA가 세금신고서를 대리 작성하는 방법
 - JA그룹 전체에서 23만 건의 세금신고서를 대리작성하고 있으며 이 중 20%가 소비세 신고자임.
 - 일본 내 전업농가가 120만 호라는 것을 감안하면 100만 명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JA를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농업인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JA의 지원 방식
- JA의 직원이 세금신고서 대리작성, 세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 JA의 세무 관련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세무사법에 저촉되지만 세금 신고 기간에 한하여 임시 세무 자격증을 발급받아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 일본의 JA 계통



- 일본의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 관련 상담과 신고서식 작성 등 세무 관련 업무는 자격증이 있는 세무사만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본 국세청에서는 JA에 한정하여 한달 간 임시 세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음.
 - 일본 국세청은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농업인 수가 많고 이들의 세무 지식이 낮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세무사 수가 적어 농업인이 납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납세 지원을 JA에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세무사 단체에서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JA에서 이루어지는 세무 상담이 경영 상담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 일반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세무상담은 JA의 농업지도원이 세무신고 기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규모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경제연과 신연의 직원이 공동으로 대응함.
 - 현의 중앙회에서는 담당 서포트 센터가 있고 세무상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음.
- 농업인의 절세와 세금 신고를 위한 JA의 교육, 홍보 제도 운영 여부
- JA의 세무 관련 서비스는 적자 가구에 대한 경영컨설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농가의 부채관리 절세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JA에서는 농업인의 세무신고를 서포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직원교육을 하고 있음.